

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해양수산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2월 24일, 서석영 의원 외 23인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(2023년 3월 1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서석영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해양환경오염행위 및 해양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감시하고, 발생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를 통해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다. 주요내용

-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- “바다환경지킴이”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조례의 개정은

-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, 폐기물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해역 정화 활동을 하는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규정함

나. 주요 내용은

- 제2조(정의)에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정의함

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바다환경지킴이”란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, 폐기물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해역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⇒ 본 조례안은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함

⇒ 『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』 제15조2의 “바다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,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범위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적절함

- 안 제6조는 “바다환경지킴이”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,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⇒ 도비가 수반되는 ‘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’의 운영, 예산 지원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해양환경오염행위 및 해양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인력인 “바다환경지

- 킴이”에 관하여 규정함
- 관련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는 “바다 환경지킴이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흡했던 지원 근거를 본 조례안을 통해 보완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인정됨
 -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,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 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